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 제2026-60호

국가공무원(연구직)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국가공무원(연구직)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

1 최종합격자

지원코드	응시직급	응시번호
201	환경연구사	20105 (이상 1명)
301	수의연구사	30103 (이상 1명)

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○ **등록대상 : 최종 합격자 2명**

○ **등록일시** : (직접방문) 2026.10.7.(수) 14:00, (우편접수) ~2026.10.7.(수)

○ **등록장소** :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3층 질병감시팀

※ (주소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암길1

○ **등록방법**

- 직접 방문할 때는 2026.10.7.(수) 14시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에서 등록, 우편 등록할 때는 등기우편이 2026.10.7.(수)까지 도착하게 해야 함

※ 가급적 비대면(우편) 방식으로 등록하되,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(질병감시팀 062-949-4221)

○ **구비서류**

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【붙임 서식1】

②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【붙임 서식2】

※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

③ 기본증명서(상세)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
④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
※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
⑤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⑥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⑦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⑧ 주민등록등본 1부

⑨ 주민등록초본 1부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

⑩ 학력(졸업)증명서(재학 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) 1부

⑪ 사진 2장(명함판(5×7) 1장, 반명함판(3×4) 1장) 및 jpg 파일

※ **사진파일(jpg파일)**은 **'26.10.7.(수)까지** 이메일(sonsy12@korea.kr)로 제출

⑫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⑬ 기타(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기타 면허증 및 자격증이 있는 경우)

3 기 타

○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최종합격자 중 등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【붙임 서식3】의 **등록·임용 포기서를 작성**하여 **2026.10.6.(화)까지 이메일**(sonsy12@korea.kr)**로 사본을 보내고 원본은 2026.10.7.(수)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**

○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 발생,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그 외 채용후보자 등록 등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(☎062-949-422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부.
2.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서식 1부.
3. 등록·임용 포기서 서식 1부. 끝.

[붙임 서식1]

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[별지 제8호서식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(법정대리인)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

이용기관 명칭	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
이용사무(이용목적)	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
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·이용 기간 (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 · 주기 명시)	
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	성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고유식별번호, 전자우편
공동이용 행정정보(첨부서류)	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

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(첨부서류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
(필요시 기재) [V]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 작성) []여권번호()

[]운전면허의 면허번호() []외국인등록번호()

년 월 일

대상자(본인) 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:

전화번호:

※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(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.)

법정대리인 성 명: (서명 또는 인)

전화번호: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

[붙임 서식2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㎝		체 중	kg	
허리둘레	㎝	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) 우: ()

종 양 질 환		이비인후질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부X선 검사	
기 타			

마약류 검사

필로폰		대마		케타민		엑스터시		코카인		아편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걸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
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판정보류"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
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 다.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"양성" 또는 "음성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(예시: "만성골수성백혈병"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
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※ 응시자의 질환이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
4. 검사 내용 중 "마약류 검사" 항목만 제외하거나,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5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[붙임 서식3]

등록·임용 포기서

(□ 등록 / □ 임용)

▪ **시험구분 :**

▪ **응시번호 :**

▪ **성　　명 :**　　▪ **생년월일 :**　　-

▪ **주　　소 :**

(우편번호　　-　　)

▪ **전화번호 :** 일반전화　　-　　-　　, 휴대전화　　-　　-

위 본인은 (　　)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□ 등록 / □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일자 :　　년　　월　　일

성명 :　　(서명/인)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

※ 괄호안 **포기사유** 예시 : 학업, 지방공무원합격(임용), 취업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
※ 성명 옆에는 반드시 **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**을 하시기 바랍니다.